



정 선 군

군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군 보

<http://www.jeongseon.go.kr/>

제513호 2020. 1. 2. (목)

【고 시】

- 정선군 고시 제2019-261호 정선(정선) 군계획시설(도로 : 소로3-13호선) 실시계획인가
고시.....3
- 정선군 고시 제2019-262호 정선(정선) 군계획시설(주차장 12-정선 향교옆)실시계획인가
고시.....5
- 정선군 고시 제2019-265호 정선 군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
인고시.....7
- 정선군 고시 제2019-279호 정선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9

【공 고】

- 정선군 공고 제2019-1349호 정선(임계) 군계획시설(도로:중로2-3호선) 실시계획 공
람 · 공고.....11

○ 정선군 공고 제2019-1350호 정선(임계) 군계획시설(도로:소로2-5호선) 실시계획 공 람 · 공고.....	13
○ 정선군 공고 제2019-1355호 정선(남면) 군계획시설(도로:소로3-10호선) 실시계획인 가(폐지) 공람 · 공고.....	15
○ 정선군 공고 제2019-1356호 정선(신동) 군계획시설(도로:소로1-2호선) 실시계획인가 (폐지) 공람 · 공고.....	17
○ 정선군 공고 제2019-1362호 정선(사북) 군계획시설(주차장 22호) 조성사업 공사 완 료 공고.....	19
○ 정선군 공고 제 2019-1381호 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한정면허) 면허계획 공고.....	20
○ 정선군 공고 제2019-1395호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정선군 규칙 일괄개정규칙안.....	22
○ 정선군 공고 제2019-1396호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정선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29

□ 발행 : 정선군청 기획실 (전화:560-2213, FAX:560-2592)

고 시

정선군 고시 제2019-261호

정선(정선) 군계획시설(도로 : 소로3-13호선) 실시계획인가 고시

강원도 고시 제134호(1985. 12. 14)로 최초 결정 고시된 정선(정선) 군계획시설(소로3-13호선)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거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20일

정 선 군 수

가. 위 치 :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266-1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종 류 : 정선(정선 향교옆) 군계획시설(소로3-13호선) 사업
- 2) 명 칭 : 정선(정선 향교옆) 군계획시설(소로3-13호선) 개설공사

다.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시설명	군계획결정		실시계획인가		비 고
	세부시설명	연장·폭원	기시행	금회시행	
도로	소로 3-13호선	L=113.0m, B=6.0 ~ 10m	-	L=36.5m, B=6.0m	

라. 사업시행자 및 주소

- 1) 성 명 : 정선군수(도시과)
- 2) 주 소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마. 사업기간

- 1) 착 수 일 : 실시계획인가일
- 2) 준공예정일 : 2020. 12. 31.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 주소 : 불임

사.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토지조서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대장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소유권이외 권리의종류 및 내용
1	정선읍 봉양리	266-1	도	17,790	81	-	국(건설부)	-	-	-
2	정선읍 봉양리	374-9	대	7	4	-	정선군	-	-	-
3	정선읍 봉양리	385-4	대	212	40	봉양리 385	정선향교	-	-	-
4	정선읍 봉양리	385-5	대	128	78	봉양리 385	정선향교	-	-	-
5	정선읍 봉양리	388-2	대	18	13	-	국 (기획재정 부)	-	-	-
계		5필지		18,155	216					

● 지장물 조서

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 의 종류	구조 및 규격	단위	수량	소유자		이해관계인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소유권이외 권리의종류 및 내용
1	정선읍 봉양리	385-5	주택	블럭기와	㎡	95.0	정선읍 비봉로 61-2	배영대	-	-	-
2	정선읍 봉양리	385-5	주택	목조 스레이트	㎡	43.0			-	-	-
			담장	블록 H=1.6m	m	45.0			-	-	-
3	정선읍 봉양리	385-4	주택	경량철골 조(조립식)	㎡	64.0			-	-	-

정선군 고시 제2019-262호

정선(정선) 군계획시설(주차장 12-정선 향교옆) 실시계획인가 고시

정선군 고시 제2016-117호(2016. 11. 04)로 최초 결정 고시된 정선(정선) 군계획시설(주차장 12)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거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20일

정 선 군 수

가. 위 치 :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385-4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종 류 : 정선(정선) 군계획시설(주차장 12-정선 향교옆) 사업
- 2) 명 칭 : 정선(정선) 군계획시설(주차장 12-정선 향교옆) 조성공사

다.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시설명	군계획결정		실시계획인가		비 고
	세부시설명	면 적	기시행	금회시행	
주차장	주차장 12	A=1,343㎡	-	A=209㎡	

라. 사업시행자 및 주소

- 1) 성 명 : 정선군수(도시과)
- 2) 주 소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마. 사업기간

- 1) 착 수 일 : 실시계획인가일
- 2) 준공예정일 : 2020. 12. 31.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 주소 : 붙임

사.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토지조서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대장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소유권이외 권리의종류 및 내용
1	정선읍 봉양리	266-4	대	66	4		국 (기획재정 부)	-	-	-
2	정선읍 봉양리	266-6	도	140	1		국 (국토교통 부)	-	-	-
3	정선읍 봉양리	381-2	도	83	3		정선군	-	-	-
4	정선읍 봉양리	385-1	도	132	29		국 (국토교통 부)	-	-	-
5	정선읍 봉양리	388-2	대	212	172	봉양리 385	정선향교	-	-	-
계		5필지		633	209					

정선군 고시 제2019-265호

정선 군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1. 정선 군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거 결정 및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승인 고시 합니다.
2. 관계도서는 정선군청 도시과, 임계면사무소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9년 12월 27일

정 선 군 수

1. 결정(변경) 취지

- 임계면 도시지역에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주민편의시설인 다목적 복합공간 설치를 위하여, 기능이 상실되는 도로 소로1-3호선을 폐지하고,
- 이에 따라 소로1-2호선, 소로1-4호선을 정비하여 교통의 효율성 및 계획된 도로망과의 연계성을 제고시키고 지역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정선 군관리계획(시설:도로)으로 결정(변경)하고자 함

2. 군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1) 교통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 도로 총괄표

유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합계	2	494	5,056	2	494	5,056	-	-	-	-	-	-
광로	-	-	-	-	-	-	-	-	-	-	-	-
대로	-	-	-	-	-	-	-	-	-	-	-	-
중로	-	-	-	-	-	-	-	-	-	-	-	-
소로	2	494	5,056	2	494	5,056	-	-	-	-	-	-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1	2	10	국지 도로	577	중로 2-2 봉산리 산 94-21임	소로 1-3 봉산리 산 57-1전	일반도로	임계천	강고97호 (90.1.19)	
변경	소로	1	2	10	국지 도로	366	중로 2-2 봉산리 산 94-21임	소로1-4 봉산리 산 234전	일반도로	준공업 지역내	강고97호 (90.1.19)	
폐지	소로	1	3	10	국지 도로	364	소1-2 봉산리 235-1구	소로1-2 봉산리 산57-1전	일반 도로	준공업 지역내	정고44호 (03.5.9)	
기정	소로	1	4	10	국지 도로	139	소로1-2 봉산리 234-8전	소로3-11 봉산리 235전	일반도로	준공업 지역내	강고101호 (03.4.28)	
변경	소로	1	4	10	국지 도로	128	소로1-2 봉산리 234-8전	소로3-11 봉산리 235-8전	일반도로	준공업 지역내	정고44호 (03.5.9)	

■ 도로 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1-2	소로1-2	· 선형 및 종점변경 B=10m, L=577m→366m 감)211m	· 소로1-3호선 폐지 및 하천구역 제척에 따른 선형 변경
소로1-3	-	· 폐지	· 대상지역에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주민편 의시설인 다목적 복합공간 설치를 위하여, 기능이 상실되는 도로를 폐지
소로1-4	소로1-4	· 기점변경 B=10m, L=139m→128m 감)11m	· 소로1-2호선 변경 및 소로1-3호선 폐지에 따른 접 속부 변경

3. 군관리계획(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도 : 실음생략

정선군 고시 제2019-279호

정선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

「산림보호법」 제45조의8제5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제4항 규정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을 아래와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31일

정 선 군 수

1. 고 시 명 : 정선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
2. 지정고시
 - 가. 지정사유 :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 나. 지정내역 : 15개소 (정선군 남면 유평리 산256임 외 14개소)
3. 고 시 일 : 2019. 12. 31.
4. 행위제한(산림보호법 제45조의10)
 - 가. 사방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 나. 사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 다. 위 사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산사태취약지역에서 행위제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산림보호법」 발췌

제45조의10(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누구든지 제45조의8제5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산사태취약지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2.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본조신설 2012.2.22]

제45조의11(산사태취약지역의 관리) ①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산사태취약지역의 산사태예방을 위하여 「사방사업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방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현지점검을 실시하고 응급조치 및 보수·보강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지점검 실시 결과 산사태 발생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의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관련 시설·토지 등의 사용을 제한·금지하거나 보수·보강 또는 제거 등 안전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안전조치 명령을 받은 토지의 소유자 및 관계인은 안전조치를 이행하고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관할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제2항의 안전조치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신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한다.

제54조의2(벌칙) 제45조의10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 고

정선군 공고 제2019-1349호

정선(임계) 군계획시설(도로:중로2-3호선) 실시계획 공람·공고

1. 강원도 고시 제112호(1987. 9. 09.)로 최초 결정된 정선(임계) 군계획시설(중로2-3호선)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인가에 따른 공람·공고를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2. 사업시행 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을 시 공람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2월 27일

정 선 군 수

가. 위 치 : 정선군 임계면 송계리 740-7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종 류 : 정선(임계) 군계획시설(중로2-3호선) 사업
- 2) 명 칭 : 정선(임계) 군계획시설(중로2-3호선) 개설공사

다.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시설명	군계획결정		실시계획인가		비 고
	세부시설명	연장·폭원	기시행()	금회시행	
도로	중로 2-3호선	L=495.0m, B=15.0m	L=351.0m, B=15.0m	L=29.0m, B=15.0m	

라. 사업시행자 및 주소

- 1) 성 명 : 정선군수(도시과)
- 2) 주 소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마. 사업기간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2020.12.31.

바. 공람기간 : 게재일로부터 14일(2019. 12. 27. ~ 2020. 01. 10.)

사. 공람장소 : 정선군 도시과 (☎033-560-2468)

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 주소 : 붙임

자.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토지조서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대장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소유권이외 권리의종류 및 내용
1	임계면 송계리	740-7	도	2,032	461	봉양3길21	정선군	-	-	-
계		1필지		2,032	461					

정선군 공고 제2019-1350호

정선(임계) 군계획시설(도로:소로2-5호선) 실시계획 공람·공고

1. 강원도 고시 제112호(1987. 9. 09.)로 최초 결정된 정선(임계) 군계획시설(소로2-5호선)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인가에 따른 공람·공고를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2. 사업시행 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을 시 공람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2월 27일

정 선 군 수

가. 위 치 : 정선군 임계면 송계리 633-10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종 류 : 정선(임계) 군계획시설(소로2-5호선) 사업
- 2) 명 칭 : 정선(임계) 군계획시설(소로2-5호선) 개설공사

다.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시설명	군계획결정		실시계획인가		비 고
	세부시설명	연장·폭원	기시행()	금회시행	
도로	소로 2-5호선	L=113.0m, B=8.0m	-	L=86.8m, B=8.0m	

라. 사업시행자 및 주소

- 1) 성 명 : 정선군수(도시과)
- 2) 주 소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마. 사업기간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2020.12.31.

바. 공람기간 : 게재일로부터 14일(2019. 12. 27.~2020. 01. 10.)

사. 공람장소 : 정선군 도시과 (☎033-560-2468)

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 주소 : 붙임

자.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토지조서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대장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소유권이외 권리의종류 및 내용
1	임계면 송계리	633-10	전	682	642	봉양3길21	정선군	-	-	-
2	임계면 송계리	633-11	전	106	80	봉양3길 21	정선군	-	-	-
계		2필지		788	722					

정선군 공고 제2019-1355호

정선(남면) 군계획시설(도로:소로3-10호선) 실시계획인가(폐지) 공람·공고

1. 정선군고시 제2001-83호(2011. 11. 17)로 최초 결정 고시된 정선(남면) 군계획시설(도로:소로3-10호선) 개설공사에 대하여 보상 협의 불가 등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인가(폐지)에 따른 공람·공고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2. 사업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을 시 공람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2월 27일

정 선 군 수

가. 사업 폐지의 위치

- 정선군 남면 문곡리 97-9번지 일원

나. 폐지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정선(남면) 군계획시설(도로:소로3-10호선) 사업
- 명 칭 : 정선(남면) 군계획시설(도로:소로3-10호선) 개설공사

다. 폐지 실시계획인가사업 현황

시설명	군계획결정(㎡)		실시계획인가폐지(㎡)	비 고
	세부시설명	면적·규모	면적·규모	
도로	소로3-10호선	L=99.0m, B=6.0m	L=99.0m, B=6.0m	

라. 사업시행자 및 주소

- 성 명 : 정선군수(도시과)
- 주 소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마. 공람기간 : 2019. 12. 27. ~ 2020. 01. 10.

바. 공람장소 : 정선군청 도시과(033-560-2456)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 주소 : 붙임

아.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토지조서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대장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소유권이외 의권리의 종류및내용
1	남면 문곡리	48-12	도	275	68		국(국토교통부)			
2	"	97-10	전	83	71		정선군			
3	"	98-10	대	26	26		정선군			
4	"	99-11	전	140	140	남면 문곡리 374	고재옥			
5	"	99-12	전	39	39	남면 문곡리 374	고재옥			
6	"	99-13	대	43	43	남면 문곡리 374	고재옥			
7	"	100-1	학	8,221	239		강원도(교육감)			
계		7필지	-	-	626					

◎ 지장물조서

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 류	구조 및 규격	단위	수량	소유자	
							주소	성명
1	남면 문곡리	99-1	컨테이너	3.0m x 6.0m	㎡	18.0	강원도 정선군 남면 문곡리 374	고재옥
2	"	48-12	창고	함석슬레이트	㎡	49.3	강원도 정선군 남면 문곡리 374	고재옥
3	"	99-11	화장실	슬래브 블럭	㎡	3.9	강원도 정선군 남면 문곡리 374	고재옥
4	"	99-5	주택	블록 슬레이트	㎡	168.09	강원도 정선군 남면 문곡리 374	고재옥

정선군 공고 제2019-1356호

정선(신동) 군계획시설(도로:소로1-2호선) 실시계획인가(폐지) 공람·공고

1. 강원도고시 제2652호(1974. 4. 09)로 최초 결정 고시된 정선(신동) 군계획시설(도로:소로1-2호선) 개설공사에 대하여 보상 협의 불가 등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인가(폐지)에 따른 공람·공고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2. 사업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을 시 공람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2월 27일

정 선 군 수

가. 사업 폐지의 위치

- 정선군 신동읍 예미리 757-3번지 일원

나. 폐지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정선(신동) 군계획시설(도로:소로1-2호선) 사업
- 명 칭 : 정선(신동) 군계획시설(도로:소로1-2호선) 개설공사

다. 폐지 실시계획인가사업 현황

시설명	군계획결정(m ²)		실시계획인가폐지(m ²)	비 고
	세부시설명	면적·규모	면적·규모	
도로	소로1-2호선	L=510.0m, B=10.0m	L=228.23m, B=10.0m	

라. 사업시행자 및 주소

- 성 명 : 정선군수(도시과)
- 주 소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마. 공람기간 : 2019. 12. 27 ~ 2020. 01. 10.

바. 공람장소 : 정선군청 도시과(033-560-2456)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 주소 : 붙임

아.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토지조서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대장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소유권이외 의권리의 종류및내용
1	신동읍 예미리	757-8	답	60	60		정선군			
2	"	758-8	답	41	41		정선군			
3	"	758-7	답	176	176	충남 예산군 예산읍	이상환			
4	"	809-20	구	969	220		국(국토교통 부)			
5	"	763-1	답	466	466		정선군			
6	"	765-1	전	272	272		정선군			
7	"	708-9	대	31	31	신동읍 예미리 708-2	김동진			
8	"	813-1	도	3,162	848		국(국토교통 부)			
9	"	703-1	답	175	175		정선군			
10	"	764-13	대	12	12		정선군			
11	"	764-12	잡	6	6		정선군			
12	"	794-14	전	10	10		정선군			
계		7필지	-	-	626					

◎ 지장물조서

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 류	구조 및 규격	단위	수량	소유자	
							주소	성명
1	신동읍 예미리	763-1	비닐하우스	6.0m × 46.0m	㎡	37.0	신동읍 예미리 718-7	경주이씨상서 공파일공종중
2	"	763-1		6.0m × 58.0m	㎡	39.0	신동읍 예미리 718-7	
3	"	763-1		6.0m × 61.0m	㎡	40.0	신동읍 예미리 718-7	
4	"	763-1		6.0m × 61.0m	㎡	35.0	신동읍 예미리 718-7	
5	"	763-1		7.0m × 12.0m	㎡	84.0	신동읍 예미리 718-7	

정선군 공고 제2019-1362호

정선(사북) 군계획시설(주차장 22호) 조성사업 공사 완료 공고

정선군 고시 제2016-25호(2016. 4. 15)로 결정 고시된 정선(사북) 군계획시설(주차장 22호)에 대하여 주차장 조성사업(변경)이 완료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사 완료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27일

정 선 군 수

1. 위 치 :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17-169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종 류 : 정선(사북) 군계획시설(주차장 22호) 조성사업
 - 나. 명 칭 : 사북읍사무소 북 주차장 조성사업
3. 사업의 면적 (금회시행)
 - 가. 면 적 : A=910m²
4. 사업시행자 및 주소
 - 가. 성 명 : 정선군수(도시과)
 - 나. 주 소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5. 사업기간
 - 가. 착 수 일 : 실시계획인가일
 - 나. 준 공 일 : 2019. 9. 25

정선군 공고 제 2019-1381호

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한정면허) 면허계획 공고

정선군 공고 제2019-1374호(2020 정선시티투어 버스임차용역)와 관련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1호가목의 2에 따라 정선 시티투어버스 운영을 위한 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27일

정 선 군 수

1. 사업종류 : 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한정면허)
2. 사 업 명 : 2020 정선시티투어버스
3. 공고기간 : 2019. 12. 27. ~ 2020. 1. 3.
4. 신청 접수기간 : 2020. 1. 3. ~ 2020. 1. 7. (3일간), 토·일·공휴일 제외
5. 한정면허 내용

가. 운행구역

노선명	운행코스
아리랑열차 연계형 노선	하이캐슬리조트(11:10) ⇨ 마운틴콘도(11:20) ⇨ 컨벤션호텔(11:30) ⇨ 민동산역(11:40) ⇨ 정선역(12:20) ⇨ 정선5일장 ⇨ 스카이워크·아라리촌 ⇨ (선택관광) 덕우리체험마을 or 화암동굴 or 화암약수·소금강길 ⇨ 정선역(17:25) ⇨ 민동산역(18:05) ⇨ 하이캐슬리조트 ⇨ 컨벤션호텔 ⇨ 마운틴콘도
KTX열차 연계형 노선	진부역(11:00 탑승) ⇨ 파크로쉬·파인포레스트(11:30) ⇨ 스카이워크(12:00) ⇨ 정선아리랑시장(12:30) ⇨ 레일바이크(14:50) ⇨ 아우라지/주례마을(16:20) ⇨ 백석폭포(18:00) ⇨ 진부역(18:50)

나. 운행대수 : 2대(노선별 1일 1대)

다. 서비스의 수준 : 시티투어 탑승자의 안전을 최선으로 하고, 친절 운행
라. 면허기간

- 아리랑열차 연계형 노선 : 2020.1월 발급일. ~ 2020.12.31.

- KTX열차 연계형 노선 : 2020.1월 발급일. ~ 2020.6.30.

마. 보조금의 지급 : 책정된 1회 버스임차비 이외의 지급은 없음

바. 한정면허 신청자격

-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면허기준 요건을 갖춘 자

6. 구비서류(제출서류)

- 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 신청서 1부 (시행규칙 제17조제3항 별지6)
- 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다. 사업계획서 1부
- 라. 사업용 고정자산의 총액 및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적은 서류 1부
- 마. 차고를 설치하려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바. 법인의 경우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면허신청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서 각 1부

7. 사업자 선정 절차

- 정선군 공고문-1374호(2020 정선시티투어 버스임차용역)에 따라 낙찰예정자 우선순위에 따라 한정면허 서류심사 후 면허 발급

8. 접수처 : 정선군청 안전과 교통행정팀 (033-560-2366)

※ 직접 방문접수 (우편접수 불가)

9. 기타 유의사항

- 가. 접수된 서류는 일체 교체 또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때에는 면허취소와 함께 형사고발 할 수 있음
- 나. 본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국토교통부 각 지침 등에 정하는 바에 의함
- 다. 정선시티투어 버스임차용역 과업지시서에 의함
- 라.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정선군청 교통행정팀(560-2366)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선군 공고 제2019-1395호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정선군 규칙 일괄개정규칙안”에 대한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12월 31일

정 선 군 수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정선군 규칙 일괄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를 자치법규에서 관행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비를 통해 자치법규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자치법규 상 어려운 한자어를 우리말이나 쉬운 한자어로 정비

조문	조례명	부서
안 제1조	정선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행정과
안 제2조	정선군 재무회계 규칙	회계과
안 제3조	정선군문화예술회관사용료징수조례시행규칙	문화관광과
안 제4조	정선군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규칙	상하수도사업소
안 제5조	정선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상하수도사업소

3. 의견제출

○ 해당 자치법규 일괄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3일 (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기획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전화번호

○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홈페이지, 이메일

※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우)26131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기획실)
- 전 화: 033-560-2228
- 팩 스: 033-560-2592
- 이 메 일: luisson82@korea.kr
- 홈페이지: <http://www.jeongseon.go.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정선군 규칙 일괄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정선군 규칙 일괄개정규칙안

제1조(「정선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의 개정)

정선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연에”를 “미리”로 한다.

제2조(「정선군 재무회계 규칙」의 개정)

정선군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4항 중 “정정·도말 또는 개서할”을 “정정하거나, 지워 없애거나 또는 고쳐 쓸”로 한다.

제127조제2항 본문 중 “해득”을 “이해”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정정, 도말 또는 개서할”을 “정정하거나, 지워 없애거나 또는 고쳐 쓸”로 한다.

제3조(「정선군문화예술회관사용료징수조례시행규칙」의 개정)

정선군문화예술회관사용료징수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 제목 “(부채 비치)”를 “(장부 비치)”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채을”을 “장부를”로 한다.

제4조(「정선군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규칙」의 개정)

정선군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해득”을 “이해”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사용하거나 도말 또는 개서할”을 “사용하거나 또는 지워 없애거나 고쳐 쓸”로 한다.

제86조제1항 단서 중 “가격양등”을 “가격이 오를 것”으로 한다.

제5조(「정선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정선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호 중 “내경”을 “안지름”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제1조(「정선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13조(당직근무자의 일반업무) ①당직근무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를 <u>미연에</u> 방지하여야 한다. 1. ~ 5. (생략) ②·③ (생략)	제13조(당직근무자의 일반업무) ①----- ----- <u>미</u> <u>리</u> -----. 1. ~ 5.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2조(「정선군 재무회계 규칙」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54조(지급명령의 발행요건) ① ~ ③ (생략)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급명령의 수수금액을 <u>정정·도말</u> 또는 <u>개서할</u> 수 없다.	제54조(지급명령의 발행요건)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u>정정하거나, 지워</u> <u>없애거나 또는 고쳐 쓸</u> ----- -----.
제127조(금액, 수량등의 정정) ① (생략) ②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 및 장부의 금액, 수량, 기타 기재사항을 부득이한 사유로 정정·삽입 또는 삭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항에 붉은 선을 긋	제127조(금액, 수량등의 정정)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고 작성자가 날인한 후 그 우측 또는 윗자리에 정정하여 삭제한 문자를 명료하게 <u>해득</u> 할 수 있게 하여 두어야 한다. 다만,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의 두서금액은 <u>정정, 도말 또는 개</u> <u>서</u> 할 수 없다.	----- ----- <u>이해</u> ----- ----- . ----- ----- <u>정정하거나, 지워 없애거나 또</u> <u>는 고쳐 쓸</u> -----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제3조(「정선군문화예술회관사용료징수조례시행규칙」의 개정)

현행	개정안
제9조(<u>부책 비치</u>) 문화예술회관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u>부책</u> 을 비치하고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1. ~ 5. (생략)	제9조(<u>장부 비치</u>) ----- ----- <u>장부</u> 를 ----- ----- . 1. ~ 5. (현행과 같음)

제4조(「정선군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규칙」의 개정)

현행	개정안
제12조(장부의 오기정정) ①장부의 오기 사항은 당해부분을 붉은선으로 긋고, 그 우측 또는 윗자리에 정정하여 삭제한 문자를 명료하게 <u>해득</u> 할 수 있게 하여 두어야 한다. ② ~ ⑤ (생략) ⑥정정시에는 약품을 <u>사용하거</u>	제12조(장부의 오기정정) ①----- ----- ----- ----- <u>이해</u> ----- ----- .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u>사용하거나</u>

나 도말 또는 개서할 수 없다.	또는 지워 없애거나 고쳐 쓸 -- -----.
제86조(소요산정) ①재고자산의 1회 구입량은 재고수준을 기준 한 적정량으로 하되, 2분 기분 이상을 일시 구입할 수 없다. 다만, 특수자재 또는 <u>가격양등</u> 이 확실한 자재에 대하여는 2분 기분 이상 1사업연도분까지 소 요량을 일시 구입할 수 있다.	제86조(소요산정) ①----- ----- ----- -----. -- <u>가격이 오를 것</u>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정선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7조(경미한 공사) 조례 제12조 제1항의 단서 규정에 따른 경미 한 공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 한다. 1. 2. (생 략) 3. <u>내경</u> 100밀리미터 이하의 연 장이 3미터 미만인 배수설비 의 설치 및 개수 4. (생 략)	제7조(경미한 공사) ----- ----- ----- -----. 1. 2. (현행과 같음) 3. <u>안지름</u> ----- ----- ----- 4. (현행과 같음)

정선군 공고 제2019-1396호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정선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12월 31일

정 선 군 수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정선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1. 개정 이유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를 자치법규에서 관행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비를 통해 자치법규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자치법규 상 어려운 한자어를 우리말이나 쉬운 한자어로 정비

조문	조례명	부서
안 제1조	정선군읍면개발위원회조례	행정과
안 제2조	정선군 포상 조례	행정과
안 제3조	정선군 향토민상조례	행정과
안 제4조	정선군 예미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에 관한 조례	경제과
안 제5조	정선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건설과

3. 의견제출

○ 해당 자치법규 일괄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3일 (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기획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전화번호

○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홈페이지, 이메일

※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우)26131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기획실)
- 전 화: 033-560-2228
- 팩 스: 033-560-2592
- 이 메 일: luisson82@korea.kr
- 홈페이지: <http://www.jeongseon.go.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정선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정선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제1조(「정선군읍면개발위원회조례」의 개정)

정선군읍면개발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통리”를 “총괄”로 한다.

제2조(「정선군 포상 조례」의 개정)

정선군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 중 “미풍양속의 순화양양에”를 “미풍양속을 드높인”으로 한다.

제3조(「정선군 향토민상조례」의 개정)

정선군 향토민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통리한다”를 “총괄한다”로 한다.

제4조(「정선군 예미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정선군 시설관정선군 예미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호 및 제3호 중 “내경”을 각각 “안지름”으로 한다.

제5조(「정선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정선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학·사계 및 관련 학·협회 등”를 “건축·토목 등 관련 분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제1조(「정선군읍면개발위원회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3조(구성) ①·② (생 략)	제3조(구성) ①·② (현행과 같 음)
③위원장은 회무를 <u>통리</u> 하고 위 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사고 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u>총괄</u> ----- ----- ----- -.

제2조(「정선군 포상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제5조(표창장) -----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사회 도의와 <u>미풍양속의 순</u> <u>화양양에</u> 솔선수범자 호자, 호 부, 열녀, 그 밖의 선행자	3. ----- <u>미풍양속을 드높</u> <u>인</u> ----- -----

제3조(「정선군 향토민상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8조(위원회) ①·② (생 략)	제8조(위원회) ①·② (현행과 같 음)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 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회무를	③----- ----- <u>총괄한</u>

통리한다.

④ · ⑤ (생략)

다.

④ · ⑤ (현행과 같음)

제4조(「정선군 예미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제8조(배수설비의 구조) 배수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배수설비의 구조를 변경하여야 할 경우 군수는 배수설비의 구조변경을 지시할 수 있다.	제8조(배수설비의 구조) ----- ----- -. ----- ----- ----- ----.
1. 배수관의 최소관경은 <u>내경</u> 150밀리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 ----- <u>안지름</u> ----- --.
2. (생략)	2. (현행과 같음)
3. 배수관은 기점·종점·합류점·굴곡점·관경이나 관종이 달라지는 곳에는 맨홀을 설치하여야 하며, 직선인 부분에는 <u>내경</u> 의 120배 이하의 간격으로 맨홀을 설치하여야 한다.	3. ----- ----- ----- ----- <u>안지름</u> ----- -----.
4. ~ 6. (생략)	4. ~ 6. (현행과 같음)

제5조(「정선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 (생 략)

3. “위험도평가단원(이하 “평가단원”이라 한다)”이란 학·사계 및 관련 학·협회 등의 전문가와 피해지역 및 인근 지자체 거주자 중 정선군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정한 사람으로 제2호의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2조(정의) -----
-----.

1. · 2. (현행과 같음)

3. -----
----- 건축·토
목 등 관련 분야-----

-----.